

업무계획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11년도 업무계획

2011. 1.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목 차〉

〈2010년 업무추진 실적〉1

〈2010년도 업무 평가〉 2

1.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5

2. 아동·노인 인권 향상 7

3.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 10

4.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11

5.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13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19

〈2011년 업무 계획(안)〉21

〈환경변화, 기본방향, 주요업무 및 총괄도〉 22

1.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33

2. 아동·노인 인권 향상 40

3.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 46

4.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51

5.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57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66

〈기획사업〉 위원회 설립 10주년 기획사업 71

2010년도 업무 추진 실적

〈2010년도 업무 평가〉

- 2010년도는 인권위 조직 축소(2009년)의 본격적인 영향을 받은 해로서 인력 감소 등에 따라 업무 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권위의 중기 로드맵 (Road Map)인 인권행동증진계획(2009-2011년)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인권보호와 향상에 주력하여

-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노인 및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보호·증진을 추진하였음

- 특히, 축소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중요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 여성, 장애, 이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팀(여성인권팀, 장애정책팀, 이주인권팀)을 설치하여 업무를 강화하였으며
 - 교육운영팀, 북한인권팀, 국제협력팀을 설치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활동 강화, 북한인권 개선 및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또한 세계인권기구대회에서 ‘2011년 비즈니스와 인권 국제워크숍’ 서울 개최 제안, ASEM 정상회의에서 ‘2012년 ASEM 인권세미나 인권위 개최’ 인준, 세계국가인권기구 협의회(ICC) 의장의 ‘이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인권위 주도’ 요청 등 국제 사회에서의 인권위 역할 강화 등의 요청이 있었음

- 반면, 유엔조약기구 권고안 이행점검의 경우 2010년 예정되었던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일정이 2011년으로 연기되는 등 특별한 유엔조약기구 활동이 없었으며

- 조직 축소에도 불구하고 진정사건의 증가에 따라 사건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증가하였고, 특히 장애 사건의 경우 집단 진정 등으로 인한 업무 폭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사회권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등 각종 전문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국회에서 지적을 받는 등 전문위원회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나이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 강요 등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획조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오랜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미흡하였음

- 또한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이 정책권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고, 기업과 인권포럼에 정부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아 향후 기업과 인권포럼에 정부부처 및 기업관계자 참여 확대·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한편 빈곤계층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이 부진하여 이에 대한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권교육 의무화 및 「초중등교육과정」 인권교육 도입 등 인권교육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교육시설 및 인력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권교육 실시에 한계가 있었으며
- 그동안 기관 협의를 통하여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에 서의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협의회를 통한 인권교육 확산에 한계가 있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인권교육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1.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1-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강화

- 성북경찰서 등 18개 경찰서 방문조사 실시 및 실태점검에 따른 개선권고를 통해 경찰업무집행 관련 인권침해 예방
- 주취자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 수원구치소 등 12개 구금시설 방문조사 및 시정권고를 통해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호에 기여
-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직권조사, 포천경찰서 폭행사건 직권조사, 전·의경 성폭력 근절 대책 의견표명 등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강화

1-2.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강화

-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권고, 전자우편 압수수색 관련 의견표명 등 15건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으며,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유권 신장에 기여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중 불심검문 규정 등에 대한 의견표명 및 공개수배제도 개선 관련 권고 등 자유권 보장 강화

1-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모두 2011년에 제 1기가 종결되므로, 2010년은 2011년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재구성하는 등 NAP와 UPR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기 권고사업을 위한 토대 마련
 - 다만, 유엔조약기구 권고안 이행점검의 경우 2010년 예정이었던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일정이 2011년 하반기로 연기되는 등 특별한 유엔조약기구 활동이 없었음
- 장애인인권재판소 설치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실태조사 및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의견제출 등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
 - 장애인인권재판소 설치 국제 심포지엄은 아·태지역에서의 장애인 인권재판소 설립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뜻 깊은 자리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국내 이행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협약이행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국내 장애인권제도의 향상 도모

1-4. 정보인권 증진

- 최근 정보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정보인권특별보고서 발간을 추진함으로써 정보인권에 관한 종합적 접근 시도
- 또한, 전신스캐너 설치금지권고,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 토론회 개최 등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2. 아동 · 노인 인권향상

2-1. 학생인권 개선

-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개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 관련 한·일 국제워크숍 개최, 교과서 모니터링 추진

위원회 구성, 개정 교과서 모니터링 및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등 학생인권 개선

- 교사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초중등 상담교사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교사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 등 아동·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2-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

-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정책 관련 개선권고, 아동 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아동성폭력재범방지 정책과 인권 토론회, 아동성폭력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법령, 정책 개선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교사 대상 인권교육 강화에 주력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성폭력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대한 개정 권고 등 등 인권적 측면에서 개선 노력

2-3. 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

-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권고를 통해 2011년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인권정책의 인권적 제도화의 방향을 제시함

- 전국 초중고 학생 운동 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성 인권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교육인원 총 6,300여 명)
 - 교육을 통해 확보된 활동지를 분석함으로써 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에 대한 새로운 자료 확보
- 학생운동선수 이적동의서 관련 정책 간담회, 스포츠 분야 인권 개선에 대한 대한체육회에 정책권고 등 스포츠 분야 인권 개선

2-4. 노인 인권보호

- 주요 4개 권역에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104명) 및 노인복지 시설(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는 등 노인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특히, 강사단 및 홍보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노인인권 증진사업에 노인 당사자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노인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등을 통해 노인분야 인권교육 강화
- 대전 온누리 노인요양원, 천안 성결원, 청주 상당 노인 요양원 등 방문조사 및 의견표명을 통해 취약 노인계층 인권 향상

3.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

3-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 <2010 기업과 인권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6회)함으로써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 그동안 갈등 관계에 놓여있던 이해관계자들 간의 건설적인 대화의 장 마련에 기여
-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개최된 제10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가하여 위원회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최종 결의안 작성에 직접 관여 등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여 인권위의 역할 제고에 기여
 - 2011년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워크숍을 인권위가 개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장애인고용기업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통한 기업 인권교육 강화

3-2. 빈곤 계층 인권 보장

- ‘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 홈리스 시설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등을 통한 빈곤계층 인권 보장 강화

3-3. 노동 취약계층 인권보호

- 대표적 노동분야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청년유니온 진정을 계기로 노동조합설립 관련 법제 개선 정책권고, 업무 방해죄에 관한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등 3건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동 취약계층 인권보호
- 고용시장 내에서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있는 청소년 근로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하였으며, 해당 부처에 현행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등 노동 취약계층의 인권개선에 역점

4.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4-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분야별 연구 및 워크숍 개최,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이주인권정책 가이드라인 수립 기반 마련
- 사이버 공간 인종주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권고를 통해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종차별 발현 방지에 기여

- 다문화 인권강사단 네트워크 구성, 강사양성 과정,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담당자 연수과정, 다문화 인권감수성과정 운영,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특강(110회, 15,933명),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다문화 분야 인권교육 활성화
- 난민 인권 순회상담, 이주노동자 순회상담 및 이주가정 일대일 심층상담 실시 등을 통해 이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중심 맞춤형 순회상담 강화

4-2.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 필리핀 및 네팔국가인권위원회와의 양해 각서 체결 등 아시아 인권기구와의 협력 강화
-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련 간담회, 사업장 방문, 공청회 개최 및 정책권고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정책 대안 마련
-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방문조사 실시를 통한 정책권고 등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쟁점 검토

4-3. 이주여성 인권증진

- 서울가이드라인 후속 국제회의 개최 및 영문판 자료집 발간· 배포 등을 통해 이주여성 인권증진에 기여
- 난민여성의 안정적 체류정착을 위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 부와의 간담회 등 난민 여성의 안정적 체류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4-4.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

-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실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권고 등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정책 추진

5.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5-1. 고용에 있어서 차별 개선

- 모집·채용 영역, 임금 지급 영역 등 영역별 고용차별 예방책자 발간, 임금차별 판단 기준 마련 및 조사매뉴얼 제작 등 고용 차별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 경찰 및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연령차별 및 5개 공공기관의 채용 시 학력 차별 직권조사 등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 및 학력 등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적극적 대응
- 연령차별금지법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등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효과 제고
- 나이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 강요 등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획조사 활성화 필요

5-2. 장애인 차별 개선

-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효과적 진정사건 조사·구제
 -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건 접수건수, 처리건수, 인용건수가 2009년 대비 2배 증가 등 괄목할 만한 성과 거양

<2009년·2010년 진정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비교> (단위: 건)

연 도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인용		기각	각하 등
			권고등	합의종결		
2009년	1,187	966	16	59	307	584
2010.12.27까지	2,375	1,864	65	92	479	1,230

- 장애인 고용, 이동권, 재화·용역, 괴롭힘 등 장애인의 생활과 밀접한 진정사건 처리로 장애인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보험가입, 신용카드 발급, 이동로, 금전착취 및 학대, 장애인운전면허 취득차별 등

○ 정책과제 및 시의적 인권현안 대응

- 정책검토, 직권조사,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초조사 등 인권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해결 방안을 제시
- 의견표명 : 정신보건법·장차법·공직선거법 개정, 장애활동보조·장애협약 의견표명
- 직권조사 : 목포농아원 장애인 폭행 사건
- 기초조사 : 기초생활 보장 수급비 전환방식, 시각장애인에 대한 블라드 위험성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2주년 토론회 개최

- 장애 당사자가 직접 토론자로 참석하는 당사자 위주의 토론회
- 현장감 있는 의견과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장차법 정착화에 기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현장 모니터링 강화

-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문화, 예술, 공공기관 행사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거점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별 모니터링단 구성 및 모니터링 실시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현장 모니터링 강화

- 장차법 단계적 이행기관에 대한 이행상황 실태조사
 - 2010년도는 문화·예술·체육활동 향유권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시행되는 원년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실태조사 및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의견제출
 -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국내 이행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
 - 정부의 동 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협약의 이행 촉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수행

- ‘장애인복지시설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발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의 ‘복지시설’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복지시설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기준 제시

- 결정례집 발간
 -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55개의 주요사례집을 발간 및 배포
 - 중앙 행정기관(17개) 및 지방자치단체(274개) 및 관련 단체에 배포함으로써 실질적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장애차별 예방에 기여

○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 권역별(3개 권역)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인권강사 양성 과정 운영 등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5-3.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 정신보건법 개정안 의견표명,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편견 해소
- 2009년도 마련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홍보
- 정신장애인 기초생활보장과 주거권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촉구
- 또한 이 자료를 근거로 토론회를 개최(12/7)함으로써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
- 정신보건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권역별(4개 권역)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 구성 등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강화

5-4. 여성 인권 향상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성위원회와 공동으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정책 간담회,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 등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개선 방안 마련
- 여성연예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관련 부처 담당자 협의 및 관련 법안(가칭 「연예인 매니지먼트 법」) 제정 모니터링, “여성연예인 인권 상황 안내 책자” 발간 등 여성연예인 인권개선
- 광고의 성 차별적 표현 모니터링, 공무원 성별 분리채용 기획조사, 「군 형법」 제92조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등 성차별 시정 및 성 소수자 보호 노력
- 여성감정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실태조사,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 방안 마련 및 공무원·교사 대상 성차별예방 사이버연수과정 운영 등 여성인권교육 실시(2,831명)
- 여성과 인권을 주제로 「2010년도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개최, 제5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참석 등을 통한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활성화

- 오랜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위해서는 연간계획 이상의 중·장기적 접근 필요

6.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특별사업>

- 2003년도부터 금년 초까지 북한인권 업무는 담당자 1인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초에 북한인권팀 구성
- 북한인권법 제정관련 정책권고,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위원장 논평, 북한지역 홍수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검토 등 적극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북한인권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위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이러한 사업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국제사회에 여론을 조성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인권 담당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북한인권 업무에 대한 공조 강화

- 국제인권포럼, 탈북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약, 탈북자 단체방문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위원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가시화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인 하나원(본원·분원)에 인권과목 개설 (매 과정 2시간)·운영
-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인권교육프로그램 관련 인권교육 연구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지원

2011년도 업무 계획(안)

I. 대내·외 환경 변화

1. 대내적 환경 변화

위원회 설립 이후 10여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 인권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국가기관의 인권 관련 조직 개편·확대 등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음

① 인권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년) 및 연령차별금지법 시행(2009년),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권교육 의무화(2009년), 군 인권교육 규정 제정(2008년) 등의 변화와 더불어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권고안 성안(2006년) 및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2009년) 등의 성과가 있었음

② 인권관련 조직 개편 · 확대

- 인권관련 조직 개편 · 확대와 관련해서는 남녀차별 사건 조사 · 처리 업무의 위원회로의 일원화(2005년), 부산, 광주(2005년) 및 대구에 인권사무소(2007년) 설치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설치(2005년), 국방부 인권과 설치(2006년), 법무부 인권옹호과의 인권국으로의 확대(2006년), 출입국관리국의 외국인출입국 · 정책본부로의 개편(2008년) 등 인권보호 · 증진을 위한 정부 조직 변화가 있었음

2. 대외적 환경 변화

대외적으로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설립(2006년) 및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제도 도입,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강조, 국제인권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등의 변화가 있었음

① UN 인권이사회 설치 및 보편적 정례 검토(UPR) 제도 도입

- 그동안 UN 경제사회이사회 하위기관이던 UN 인권위원회가 제 60차 UN 정기총회(2006년 4월)에서 인권이사회로 개편 · 확대되었으며

- UN 인권이사회 신설과 더불어 보편적 정례 검토(UPR) 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매 4년마다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검토를 받도록 하였음

② 국가인권기구 역할 강조

- UN 인권이사회는 국가인권기구에 UN 인권이사회 참석 및 발언, UPR 보고서 제출 등의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 UN은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인권협약의 국가적 차원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신뢰할 만한 기구로 인식하고, 공식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③ 국제인권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의 위상 및 역할 확대

- 우리나라는 UN 인권이사국 진출 및 인권이사국 재선(2008년)에 성공하는 등 국제인권 분야에서 위상을 정립하고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 유엔 사무총장(반기문), UN 아동권리위원회 의장(이양희) 등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위상 강화에 비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도 증가하고 있음
- ※ UN사무총장(반기문), UN인권차석대표(강경화), UN 아동권리위원회 의장(이양희), 사회권위원회 위원(신혜수),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김형식)등

4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 우리나라는 현재 총 8개의 주요 인권 협약 중 이주노동자협약을 제외한 7개 협약의 당사국이며, 2009년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의 심사를 마친 바 있음
- 당시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세계 12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사회권보장, 취약계층보호에 미흡하며,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도 사회권 관련 진정조사권을 허용하고 사회권에 대한 업무권한을 강화하고 확장시키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II. 2011년도 업무계획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1. 기본 방향

- 2011년도는 인권위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인권행동 증진계획(2009-2011년)이 마무리 되는 해이기도 함
- 따라서 2011년도에는 인권위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인권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반영한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인권위 구현

2. 주요 업무

①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 형사절차상 인권침해에 대한 기획조사, 구금시설·보호시설 방문 조사 강화를 통한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강화
- 형법·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집회시위 현장 무단채증 관행에 대한 개선권고 등 자유권 보장 강화
-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발간, 정보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등 정보인권 증진

②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을 통한 생활밀착형 인권 강화

- 장애, 아동, 노인, 여성, 이주인권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의 인권 보호 강화
-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스포츠 선수 인권보호 등

<장애인 차별개선 및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 판단기준 마련, 장애유형별 차별 실태조사 등을 통한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보호 기반 구축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강화, 장애분야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장애인 차별 개선
- 정신 장애인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걷기 대회 캠페인, 정신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토론회, 정신장애분야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수립,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 실행계획 수립 등을 통한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 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 위장결혼에 다른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이주여성 인권증진
-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 방안 마련 등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

<아동·노인 인권 향상>

-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아동인권 과제 개발 및 정책검토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
- 노인인권 상황 모니터링, 노인집중 취업직종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권고, 노인의료복지시설 기획조사 등을 통한 노인인권 보호

<여성인권 향상>

-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개선 등을 통한 여성인권 향상
- 성희롱 예방 및 홍보 강화, 성희롱 사례집 발간, 특정직·교정직 공무원 성별 분리채용 개선 등을 통한 여성인권 보호

<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및 스포츠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분야 인권 개선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 기업과 인권 관련 국가보고서 발간 추진을 통한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통한 경제적 약자 인권 향상
- 인권관련 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등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 기초생계비 지급기준 검토 등 빈곤계층 및 사각지대 인권과제 개발을 통한 빈곤계층 인권보장
-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 종사자 인권개선,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검토 등을 통한 노동 취약계층 인권 개선

③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 제1기 NAP 평가 및 제2기 권고안 준비, 제2차 유엔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심의 대비 준비, 각 조약기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등을 통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 아·태지역 기업과 인권 워크숍 개최 추진, ICC 이주인권 실무그룹 구성 및 운영 추진 등을 통한 인권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정립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

④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이산가족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탈북자 등 해외 현지조사 등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
- 북한인권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활용한 정책권고 추진, UN 북한인권 결의안에 위원회 의견 반영 추진 등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⑤ 위원회 설립 10주년 기획사업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 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 위원회의 도전과 전망” 개최를 통하여
- 그동안에 성과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향후 인권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위 구현의 기반 조성을 위한 장(場) 마련

<국민 인권의식 조사 실시>

- 2005년에 실시한 국민인권의식조사 이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지점과 인권감수성이 미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국민의 구체적인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개발 및 조사구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위원회의 활동 방향 제시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 유엔인권이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2010-2014)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인권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인권교육법 제정

2011년 업무계획 총괄도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목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 실현

기본 전략

성과 목표

I.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 자유 강화
2.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강화
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4. 정보인권 증진

II. 아동·노인 인권향상

1. 학생인권 개선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인권개선
3. 스포츠 선수의 인권보호
4. 노인 인권보호

III.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

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2. 빈곤계층 인권보장
3. 노동취약계층 인권 개선

IV.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2.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3. 이주여성 인권증진
4.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

V.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1. 고용에 있어서 차별개선
2. 장애인차별 개선
3.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4. 여성인권 향상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1. 북한주민 인권상황 개선
2. 인도주의적 사안 해결노력 추진
3. 새터민(탈북아동) 인권개선 노력 추진

<기획사업> : 설립 10주년 기획사업

1.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2. 국민 인권의식 조사 실시
3.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I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강화

① 인권침해 기획조사

- 수사기관의 체포, 조사과정, 재판과정 및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 실시
- 교도소 등 구금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방문·직권 조사 등 인권 개선 활동 강화

○ 형사절차상 인권침해에 대한 기획조사

- 고문피해자 실태조사(용역)
- 경찰 수사 관련 CCTV 운영·관리 현황 실태조사
- 주취자 인권보호 개선방안 수립
- 법원의 재판관련 진정사건 분석

○ 구금시설·보호시설 방문조사

- 신규 구금시설에서의 거실 내 환기시설 집중 점검
- 정신질환 수용자의 의료처우 관련 사항 직권조사

2.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강화

① 자유권 관련 법령·정책·제도 개선 활동 강화

자유권 관련 현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관련 법령, 제도 등을 연중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 형법·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집회시위 현장 무단채증 관행에 대한 개선권고 등 주요 정책과제 권고
 - 그동안 주요 사회적 의제로 이미 제기된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개선권고 추진

- 인권현안 적극 대응
 - 국회 및 정부의 입법 과정 모니터링 강화
 - 일상적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 적극대응 및 정책과제 발굴

- 권고 이행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권고 회신기간 명시(90일 내외, 위원회법 개정 추진)
 - 피권고기관과의 정책협의 기능 강화(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활용)
 - 전문가 자문 적극 활용 등 권고 내용 설득력 제고

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및 각 유엔조약기구 권고안 이행점검 활성화

- 제2기 NAP 운영 내실화를 통한 인권선진국 기반 마련
- UPR 이행모니터링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최선진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제1기 NAP 평가 및 제2기 권고안 준비

- 분야별 실태조사, 기획단, T/F 구성·운영(외부전문가 참여), 공개토론회 개최 등
- 제1기 NAP 평가결과 미이행 부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슈 등을 반영하여 제2기 권고안 마련

○ 제2차 유엔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심의 대비 준비

- 제1기 UPR 평가 및 제2기 준비(NAP와 연계추진)
- 제1기 심의와 구분되는 제2기 UPR 심의의 의의, 제1기 UPR 심의에 대한 평가 등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심의를 받고 33개 항목의 권고를 받은 바 있음(제2차 심의는 2012년 5월 예정)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이행모니터링 협력사업 추진(활동 사례 공유 등)

- 각 조약기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 2011년 및 2012년에 4개 유엔조약기구(자유권, 아동권 및 고문방지, 장애)에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예정
 -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종합적·입체적인 관련 사업 추진(전문가 토론회, 조약기구 위원 초청 등)

- 유엔 조약감시기구 강화 관련 국제회의 개최 추진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에서 유엔 조약감시기구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국제회의를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주관해 줄 것을 요청
 -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공동개최 검토 추진

- 아·태지역 기업과 인권 워크숍 개최 추진
 - 2010년 제10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 결의한 2011년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기업과 인권 워크숍 개최.

- 인권문헌 번역 및 사회권보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 유엔, 국제인권단체에서 발간한 인권 관련 주요 문헌 번역 발간
 - 학술 심포지엄(사회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한) 개최

- 인권과 국내외 인권보장 규범·제도 이해서 발간
 - 계속 발전하는 인권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보급하여 인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

- 국내외 인권보호보장체계 속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인권위의 역할 모색

○ 주요 국제인권규범의 재판반영 제고 개선권고

-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국제인권규범 수용 정도가 미약하여 이의 강화를 위한 주요 국제인권규범의 재판반영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 추진

②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적 이행 강화

-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가입하고 있지 않아 그 활동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위 선택의정서 가입 촉구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위 선택의정서 가입 촉구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돈독히 하고 국내적 분위기 확산 도모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심포지엄 개최

-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국제전문가 초빙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및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이행 점검
- 국제메카니즘 속에서 우리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내 이행의 국제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 마련

③ 2020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수립 연구

최근 유엔의 인권교육훈련선언 작성과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실시권고에 따른 국가수준의 인권교육 종합 발전 계획 수립 필요

- 과거 10년간 인권교육 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10년간 인권교육 활성화를 비전·목표·전략 및 분야별 추진과제 등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실시
-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 실시

4 정보인권 증진

① 정보인권보호 및 정책연구

- 정보인권 4개 영역과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전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관행을 개선
- 정보인권 관련 워크숍 및 토론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관련 실무 역량 강화

○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발간

-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 정보인권의 초석과 기틀 마련
-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균형 잡힌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보고서 발간

- 정보인권 침해사례 발표(시연) 및 토론회 개최
 - 주요 권역별로 침해사례 시연 및 토론회
 - 정보인권보호 관련 전문가 릴레이 토론회
 - 정보인권 관련 제도 개선
 -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인권 관련 법령, 정책 제도 개선

- 정보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정보문화향유권 보호 관련 연구 역량 강화 및 실무 능력 함양

-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 개인정보감독기구 연례회의 참석
 - 개인의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역점

II 아동 · 노인 인권 향상

1. 학생 인권 개선

①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유엔인권교육프로그램 제2차시기(2010-2014)에서 요구하는 고등 교육체계 및 교사·교육가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부응

- 대학 및 초·중등 정규교육과정 등 사회 각 분야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관련기관·단체와 협력·모니터링 등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운영 지원(10개 대학)
 - 인권교육협의회 운영(16개 교과부 등 시·도교육청)
 - 초중고 교과서 모니터링

- 학교 인권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한 인권교육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인권교육 강사양성과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유치원, 초중고 인권강사 양성 및 교사대상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 운영
 - 어린이 청소년 교실 사이버 인권교육 자료 개발
 - 인권교육연구학교 지원
 -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프로그램 운영

- 유엔아동권리협약가입 2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등
 -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생하는 대토론회 등 관련행사 개최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세계인권선언·아동권리협약 읽기 계기교육 추진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

① 아동·청소년 인권개선

- 아동인권 주요 현안,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위원회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안 등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아동인권 과제 개발 및 정책 검토
- 아동권리협약 제3.4차 정부보고서 심의 대비 사업 추진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상황 점검

-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아동인권 과제 개발 및 정책검토
 -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검토(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 대학생 등록금, 가족관계등록제도, 아동 건강권 등)
- 아동권리협약 제3.4차 정부보고서 심의 대비
 - 워킹그룹 회의 시, 본 심의 시 의견서 제출
 - 의견서 제출을 위한 전문가그룹 운영, 의견조회 등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점검

-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후 권고 관련 토론회,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점검 위한 심포지엄 등 개최

3. 스포츠 선수의 인권보호

① 스포츠 분야 인권 개선

-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권고의 실질적 이행 도모
-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에 기초한 선진국형 국가 스포츠 전략 수립에 기여

○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위한 실행회의 개최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활용, 이해관계자 적극 참여 유도

○ <가이드라인> 국문 해설서 및 영문본 발간·배포

- 가이드라이의 국내 이해를 제고하고 위원회 스포츠 인권 사업의 국제적 홍보 강화

② 스포츠 인권 교육 활성화

- <가이드라인>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현장 교육 활동 진행
- 2009년부터 시작된 학생 운동선수 대상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인 '스포츠 성 인권 교육' 지속적 실시

- 스포츠 성 인권 교육
 - 2010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
- 스포츠 지도자 등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 지도자 단체와 협력

4. 노인인권 보호

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노인 당사자의 눈으로 노인인권 상황 모니터링
- 노인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
- 노인 인권 역량 및 감수성 강화

- 노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노인인권 상황 모니터링
 -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수도권, 부산, 광주, 대구 4개 권역에서 100명 이내)
 - 노인집중 취업직종에 대한 인권상황을 노인 스스로 이해하고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 노인인권지킴이 인권 역량 강화
 - 2010년 양성한 노인 강사단을 활용하여 당사자 교육 강화
 - 모니터링 사전교육, 홍보팀 운영, 인권교육 실시
- 노인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검토
 - 노인집중 취업직종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권고

② 노인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지역사회 및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인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관계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감수성 및 의식 제고

-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운영
 -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 노인복지 분야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노인복지분야에서의 자발적인 인권교육 활성화 도모
 - 노인복지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③ 노인의료복지시설 기획조사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아동·노인시설을 적극 탐문하여 방문 조사 또는 직권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시설 생활 아동·노인들의 인권 보호 필요성 제기

- 노인시설 관련 전문가,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문제 시설 탐문
 - 대상 시설의 특성, 인지된 인권침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직권조사 또는 방문조사 여부 결정

- 관련 전문가와 함께 방문조사 위원 또는 직권조사 자문단 운영
 -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대안 마련

- 조사 결과 및 개선 대안을 사회적 의제화
 - 필요시 해당 기관에 개선안 권고 등

Ⅲ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① 인권 관련 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민국의 인권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인권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지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수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수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 인권지수와 사회권 지표 개발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 개발기초 연구 관련 용역 발주 및 중간점검, 최종 사업 결과 보고

② 기업과 인권 정책 개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인권존중 활동을 견인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권신장 및 국내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

- 기업과 인권 관련 국가보고서 발간 추진
 -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국내제도, 정책, 관행 조사연구
 - 정책·제도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 작성
 -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인권 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
- <기업과 인권 포럼> 운영
 - 참여기업을 대폭 확대하며, 관련 정부 부처 참여
 - 기업의 인권정책보고서 개발 관련 워크숍, 인권경영 자가진단도구 개정 작업 및 인터넷 기반 자가진단시스템 개발 기초 연구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능 강화 및 글로벌컴팩트(본부 및 한국협회)와의 협력 확대
- 기업과 인권분야 국제활동 강화
 -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활동 참가 - 아태지역 공동대표
 - 기업과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국제워크숍 개최 - 10월

③ 기업 인권교육

기업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유엔 글로벌컴팩트 등 국제기준 준수 및 인권존중 기업 문화 조성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존중의 선진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기업대상 인권특강 및 교육과정 운영

2. 빈곤계층 인권보장

① 빈곤계층 등 경제적 약자 인권향상 교육 강화

경제적 약자 관련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 약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상담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종사자의 활동이 인권옹호 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촉진
 -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과정 운영

② 빈곤계층 및 사각지대 인권과제의 개발

생존권 등 빈곤계층의 사회권 현안 및 사각지대의 인권과제를 개발하여 정책권고

- 취약계층 생존권 등 사회권 관련 현안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권 과제를 개발하여 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기초생계비 지급기준 검토, 군이명자 인권개선 검토 등

3. 노동 취약계층 인권 개선

① 노동취약계층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 양극화 심화 및 근로빈곤층(working poor) 확대 상황에서 고용을 통한 기초적 삶의 수준 보장이란 측면에서 노동 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생존 확보 및 노동인권 보호 필요성 증대
- 일을 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백 해소 및 현행 법제 개선 등 정책적 대안 마련 및 사회적 의제 형성

○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 종사자 인권개선 검토

- 가족구조의 변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노인에 대한 돌봄이 가정 내에서 불가능한 상황 도래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2008.7.1) 이후 사회복지서비스로 제도화하였으나, 돌봄노동 종사자는 저임금 등 열악한 상황
- 현행 문제점, 실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부처 등에 정책권고 추진

○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검토

- 정부의 고용유연화 정책 방향 속에 파견대상업무의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 예상

-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비정규직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현안 과제로서 의견 표명
- 직업소개료, 파견수수료 등 과도한 중간 공제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과정에서 과도한 중간 수수료 공제 문제 심각
 - 이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자료 확보, 문제점 공유와 사회적 의제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책권고
- 문화·예술·스포츠 등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비정규직 인권문제와 관련,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제조업 등 일반산업분야 집중, 특수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
 - 이에 따라 문화·예술·스포츠 등 특수산업분야 비정규직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추진

IV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①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정부 및 지자체가 이주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할 때 그 정책의 내용과 이행방법이 인권에 기반한 인권친화적인 것인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 이주인권 분야별 추진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이주인권 쟁점사항별 분석 등
-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상황 등
- 의견수렴 및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표
 - 정부부처,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표

② 위원회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 실행계획 수립

그동안 추진한 이주인권 관련 사업을 종합하고, 이주인권증진을 위한 상황 파악, 즉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진단을 통해 중장기적 이주인권 의제를 발굴하여 연차적 실행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연구
 - 그간의 위원회 차원의 이주인권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향후 추진해야 될 정책과제 제시
- 현안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의뢰
- 주요 이주인권 의제 발굴 및 제안된 정책과제 타당성 검토
-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성 및 효과성 확보
 - 토론회 ·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실행계획 확정

③ 다문화 분야(북한이탈주민 포함) 인권교육 활성화

다문화사회 구성원 및 북한이탈주민 권리구제를 위한 차별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인권친화적 다문화 사회 분위기 확산 유도

- 다문화 인권교육 기반 조성
 - 다문화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 정책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 다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성

- 다문화 관련 콘텐츠 재정비
 - 다문화 인권교육 참고자료집 개발
 - 교육 대상별 맞춤형 표준교안 정비

- 다문화 인권교육 강사 인력 양성 및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 다문화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운영
 - 다문화 사회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운영
 - 북한이탈주민(청소년) 인권교육 과정 운영

2.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①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

2004. 8. 시행된 고용허가제 만 6년이 되어 2010년에는 4천여명이 귀국대상이었으나 상당수 귀국을 거부하여 체류자격을 상실한 채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취업 중이고,

2011년 3만여명, 2012년 4만 5천여명이 귀국 대상인 걸 감안하면 상당한 수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발생할 것이며 이들의 열악한 근로환경문제와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에 고용허가제가 인권보호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고용허가제로 인한 인권문제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고용허가제 운영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개선 방안(초안) 마련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개최
 - 소관 정부부처, 전문가 등 참석
- 고용노동부 등 소관 정부부처에 대해 정책권고

②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실시

지금까지의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는 모두 하절기에 실시되었으나 2011년 방문조사는 동절기 보호실 처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 마련

- 동절기 처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2월에 방문조사 실시
-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문조사팀 구성
 - 이주인권 활동가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 편성
- 피호보자의 입소 및 검사, 외부통신권, 건강권, 문화권, 권리구제 등과 더불어 난방시설 및 그와 관련된 안전시설 등 동절기에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
-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시정권고 조치

3. 이주여성 인권증진

①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단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착 과정에서도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할 개연성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체류 문제 등이 전적으로 배우자인 남편의 의사에 달려 있는 부분에 대해 인권 보호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검토
-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귀화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②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위장결혼 판결에 따른 한국 국적취소 중국 측의 국적회복 거부로 중국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사회에서 무국적자로 생활하는 이들(36명)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필요

-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의 생활실태 파악
- 외교부, 법무부 및 재한중국대사관 등과의 정책협의
- 개선 방안 검토, 필요시 해당 기관에 개선 권고 등

4.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

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접근권 개선 방안 마련

미등록 이주아동이 공공 의료 및 일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아동권리협약 의무 달성 및 국가 품격 제고

-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서비스 실태 파악
- 실태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 소관 정부부처에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V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1. 고용에 있어서 차별개선

① 차별결정 사례 확산을 통한 차별시정 강화(차별유형별 제도적 접근)

- 축적된 차별 판단례를 심층 분석하여 차별유형별 판단 논리를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차별 판단 사례 제공
 - 위원회 10대 차별 사건(결정) 선정 및 기획 홍보 실시
 - 성별에 따른 고용 차별 기획 조사 실시
-
- 지난 10년간 누적된 결정례를 활용한 차별 유형별 결정례 분석 및 사례집 발간
 - 분야별 차별 결정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요약하여 일반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집 보급
 - 위원회 10대 차별 사건(결정) 선정 및 발표
 - 10년간의 주요 차별 결정례를 홍보하고 이중 가장 의미있는 10대 차별 사건 선정 및 기획홍보
 - 성별에 의한 고용차별 기획조사
 - 금융권에서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계약직 교원의 임신·출산 휴가 제한 사례에 대한 조사
 - 전공의들에 대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조사 등

② 능력위주의 채용 관행 정착(연령 등 각종차별 시정 및 예방 강화)

- 채용과정의 각종 차별적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차별적 채용 관행을 개선을 위한 채용 심사 기준 마련 및 권고

- 채용과정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 공기업, 민간기업, 채용대행업체 등의 입사지원서 및 채용심사 기준 등의 차별적 항목 조사
 - 인사담당자, 구직자 등 대상으로 차별적 요소에 대한 인식조사
- 차별적 채용관행 개선을 위한 채용 심사 기준 마련 및 정책권고
 - 공정한 채용 심사를 위한 입사지원서 표준 양식, 채용심사 기준 및 면접심사 가이드 등 개발 보급
 - 공정한 채용 관행 정착을 위한 의견 표명 또는 정책 권고

2. 장애인 차별 개선

①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보호 기반 구축

- 장애인 차별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개별 진정사건으로 차별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
- 따라서 차별시정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차별시정 기반 마련, 판단기준 설정, 장애유형별 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
- 더불어 장애계 및 관련단체와 전문가,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해 지속적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 판단기준 마련
 - 2010년 수행된 장차법상의 총칙, 고용 부분 완료
 - 2011년은 교육, 재화이용, 사법행정절차 등에서의 편의제공 기준 연구 지속 수행

- 장애인차별금지법 토론회
 - 2011.4.20.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우리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적극 홍보
 - 장애인 당사자·국민·관련부처·인권단체로부터 장애인 관련 의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 서울, 대전, 강원지역에 본부 주최로 개최하되 지역별 장애관련 기관 및 NGO, 전문가와 협력하여 공동추진

- 장애유형별 차별실태조사
 - 위원회 설립 10주년 신규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의 권리의식 수준과 욕구 등 차별개선의 기초자료 조사
 -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 단체들이 지체, 시각, 청각, 정신장애 등 일부유형에만 집중, 다른 장애유형 소외
 - 장애 유형별 당사자의 사회·문화·정치적 참여 욕구를 수익자(장애인) 관점에서 조사
 - 장애유형별 차별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 차별시정 방안을 마련, 주요 차별영역에 대한 인식 개선 도모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이 법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장애인 차별 개선에는 아직 미흡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을 모니터링하여 차별 사례발굴, 현장시정 등 차별예방 및 인권보호
 -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실질적 차별 개선 도모

-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제기에 대비, 위원회가 장애인 생활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모니터링 실시

- 다양한 과제를 모니터링 하기 보다는 1~2개 과제를 전국 단위로 집중하여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단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인권사무소 협의)
 - 5 ~ 7개 거점지역(수도, 충청, 강원, 부산, 광주, 대구, 제주)
 - 주요 장애인 생활 모니터링 대상 분야 : 우선 공공분야 위주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활동 결과보고 및 발표회를 개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필요시 위원회 보고후 정책권고 또는 의견표명 검토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의무 이행 실태조사
 - 장애인 생활밀착형 과제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 과제는 장애인 당사자 참여 및 단체 의견 수렴 진행
 - 건축허가 관련, 장애인콜택시 등 편의제공 이행관련

③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으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인권교육 수요가 증대
-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특히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인권관점 도입과 감수성 향상에 부응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운영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 장애인복지 분야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장애인복지분야에서의 자발적인 인권교육 활성화 도모

- 장애인복지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④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

- 2009년 위원회 조직축소로 인력은 감소되었으나 장애차별 사건은 집단진정 제기 등 폭증 추세
→ 장애차별진정사건 2009년 1,100건 → 2010년 2,300건(2배 이상 증가)
- 한정된 인력으로 폭증하는 진정사건을 처리하기에는 한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정사건 처리 효율화 방안 시도

○ 장애 정책업무와 진정사건 업무 통합운영

○ 조사관 전문성 확보, 반복 및 패턴화된 진정의 통합 또는 병합

○ 집단진정의 신속한 분석과 정책협의 및 정책권고 등을 통한 처리

3.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 및 편견 해소

- 인권의 가장 취약계층인 정신 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정신 장애인 관련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토론회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정신 장애인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걷기 대회’ 캠페인
 - 정신 장애인 국가보고서의 핵심추진과제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
- 정신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토론회
 - 정신장애인 당사자, 관련 전문가(교수, 변호사, NGO) 참여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 점검 등

②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로 동 분야의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어 이에 교육실시 및 강사양성 등 적극 대응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분야 대상 인권교육 운영
 - 정신보건분야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운영
 - 정신보건분야분야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정신보건분야에서의 자발적인 인권교육 활성화 도모
 -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 보수교육 운영

4. 여성인권 강화

①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 개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상담원 등 고객의 감정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일을 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 ○ 여성 감정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
-
- 여성감정노동 관련 간담회 및 기획보도
 - 대형마트 판매원,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업종 종사자의 노동 현실과 차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간담회 및 기획보도 추진

 - 여성 감정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대 국민 캠페인
 - 여성 감정 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대우하는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 감정노동 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주 가이드라인 마련
 -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② 성희롱 예방등 성 차별 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성희롱 발생 감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업 추진
- 여성연예인 인권개선 사업의 후속조치 및 각종 차별 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

- 성희롱 예방 및 홍보
 -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 마련
 - 직장내 성희롱 상담의 1차 상담창구가 되고 있는 여성단체와의 협력 강화
- 성희롱 사례집(4권) 발간
 - 성희롱 사건 권고사례 등을 소개하여 성희롱 유형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 경찰 등 특정직 및 교정직 공무원 성별 분리채용 개선
 - 경찰, 소방, 교정직 여성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별 분리채용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방안 마련

○ 여성연예인 인권개선 후속사업

- 여성연예인 인권의식 강화를 위해 동영상 콘텐츠 등 개발·보급
- 연예관련 학과 개설 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활용도 제고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2006년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표명' 및 2007년 10대 중점사업, 2008년도 6대 중점사업, 2009년 ~ 2010년 특별사업 지정 등의 연장선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연구, 정책권고, 의견 표명 추진

1.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국제협력 추진

①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일정 및 장소 : 2011년 상반기, 유럽지역
- 주제(안) : 이산가족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인 차원에서 서신교환 가능성을 위해 국제적십자사, 만국우편연합(UN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와 협의
- 발제자, 토론자 등 전문가 섭외 및 외통부 등 관련부처와 업무 협의

② 탈북자 등 해외 현지조사

- 재중 탈북자 인권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 탈북자 문제 관련 학자, NGO단체, 현지인(한족, 조선족) 의견 수렴
 - 탈북자 인권현황 및 생활실태 파악, 그리고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 유럽, 러시아 지역 등 제3국 체류 탈북자 인권현황 파악
 - 제3국 정착 탈북자의 약 90%가 독일(1,730명), 영국(1,530명) 등 유럽지역에 분포. 영국은 최근 2년간 매년 500여명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들이 왜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한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필요
 - 러시아 체류(별목공) 탈북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2. 전문가 토론회 등 국내협력 강화

① 북한인권 관련 공청회,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북한인권포럼 정례화 운영(분기별)

- 북한인권 관련부처(국정원, 외통부, 법무부, 통일부)와 실무정책 협의회 운영

- ‘전쟁, 평화, 인권’이라는 주제로 세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 북한인권 주요 이슈에 대한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수시)

② 단체방문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탈북자 단체, 북한인권 관련 NGO 및 연구기관 방문(수시)
- 하나원, 한겨레 학교, 하나센터 등 탈북자 관련 기관 방문

3. 자료개발

① 북한인권 관련 자료발간 및 도서구입

- 2010년도 용역보고서(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영문번역
- 북한인권 특수자료(노동신문, 북조선 정책동향 등) 연속 간행물 구독(행정법무담당관실과 협조)

② 북한인권관련 교육자료 개발 추진

-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교육자료 개발 추진 등

4. 권고, 의견표명 등 정책 개발

① 북한인권 증장기 정책 로드맵 활용한 정책권고 추진

- 관련부처, 전문가 공청회 추진(1월)
- 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상반기)
- 영역별, 이슈별 전문가 간담회 추진(상반기)

② 정책권고, 의견표명 추진 강화

- 북한인권과 관련된 긴급현안에 대한 권고 등 추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검토
- 조사국에서 이관된 진정사건 정책 검토

③ UN 북한인권결의안에 위원회 의견 반영 추진

- 북한 UPR 권고사항인 북한내 인권기구 설립 및 세계인권선언문,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등을 북한주민에게 알리는 방안 검토
-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④ 북한인권 정책 강화 방안 검토

-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책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또는 ‘북한인권특별전문위원회’ 설치
방안 검토

- 북한인권에 대한 시각차를 줄이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 제거

5]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 실시

- 하나원(본원·분원) 인권과목 개설·운영 등

기획사업 | 위원회 설립 10주년 기획사업

I. 위원회 설립 10주년 기획 사업 추진 배경

1. 10년에 대한 평가를 통한 향후 나아갈 방향 제시

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위를 만들기 위한 노력 필요 (→ 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2. 인권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①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 및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권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 제시 (→ 국민 인권의식 조사 실시)

② 인권침해, 차별행위 예방의 근본 수단으로서의 인권교육

-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사후구제도 중요하지만, 인권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국민의 인권의식 개선 및 인권보호·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
- 인권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의 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마련 요구 (→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II. 위원회 설립 10주년 3대 기획 사업

1.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2. 국민 인권의식 조사 실시
3.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1.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① 사업 목적

- 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 위원회의 도전과 전망” 개최를 통하여

- 그동안에 성과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향후 인권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위 구현의 기반 조성을 위한 장(場) 마련

② 사업 내용

- 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정책, 차별, 침해, 교육, 상담 등 위원회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제시를 위한 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위원회의 도전과 전망」 심포지엄 개최

③ 기대 효과

- 10년의 성과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향후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권 구현

2. 국민 인권의식 조사 실시

① 사업 목적

- 2005년에 실시한 국민인권의식조사 이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지점과 인권감수성이 미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국민의 구체적인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개발 및 조사구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위원회의 활동 방향 제시

② 사업 내용

- 국민인권의식조사의 방향 및 구체적인 조사항목 설계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획회의 추진
-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세부항목별 인식수준 및 인권감수성, 인권위에 대한 인지도 등을 중심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대상 조사 실시(연구용역)
-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홍보 등 후속조치

③ 기대 효과

- 인권과제 및 인권교육의 과제 개발
- 국민의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 제고

3.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1] 사업 목적

- 유엔인권이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2010-2014)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인권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인권교육법 제정 필요

2] 사업 내용

- 인권교육법 제정 준비활동
 - 국회 법안 설명, 자료제공, 국회 법제실 법안 협의 등 국회 지원 활동
- 운영위원회 심의 지원활동
 - 발의의원 섭외와 운영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위한 자료제공 및 협의
 - 법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에 제출되는 경우 집중적인 업무처리 필요시 TF 추진(국회 및 예산담당, 인권교육담당 등)

○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지원활동

-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위한 자료제공 및 협의, 간담회 개최 등 국회 지원활동 지속추진

③ 기대 효과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인권교육훈련선언」 및 「제2차 세계인권교프로그램(2010-2014) 행동계획」의 법제화 및 실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인권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수행
- 모든 국민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인권교육 책무를 명확히 하며, 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 법체계 구축을 통해 인권친화적 사회 조성